

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(제97조의3 관련)

1. 적합성평가 수수료

가. 신청 수수료(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8제4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신청)

구분	수수료
적합인증	165,000원
적합등록	55,000원
잠정인증	165,000원

나. 변경신고 수수료

유형	구분	수수료
1)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	적합인증	165,000원
	적합등록	55,000원
2)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변경	적합인증	5,000원
	적합등록	2,000원

2.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신청, 지정갱신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

가.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

- 1) 신청 수수료: 50,000원
- 2) 서류심사 비용: 노임단가 × 심사원 수 × 심사일수 + 출장여비
- 3) 현장심사 비용: 노임단가 × 심사원 수 × 심사일수 + 출장여비

나.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

- 1) 신청 수수료
 - 가) 지정분야 추가: 50,000원
 - 나) 시험항목 추가: 20,000원
- 2) 서류심사 비용: 노임단가 × 심사원 수 × 심사일수 + 출장여비
- 3) 현장심사 비용: 노임단가 × 심사원 수 × 심사일수 + 출장여비

다.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

- 1) 신청 수수료: 50,000원
- 2) 서류심사 비용: 노임단가 × 심사원 수 × 심사일수 + 출장여비

3) 현장심사 비용: 노임단가 × 심사원 수 × 심사일수 + 출장여비

라.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

1) 신청 수수료

가) 지정분야 추가: 50,000원

나) 시험항목 추가: 20,000원

2) 서류심사 비용: 노임단가 × 심사원 수 × 심사일수 + 출장여비

3) 현장심사 비용: 노임단가 × 심사원 수 × 심사일수 + 출장여비

마.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.

비고

1. "노임단가"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
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으로 한다.

2. "출장여비"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(공무원의 경
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말한다)에 따라 계상한다.